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9. 10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장



- 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2조 및 제29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이O지	'03.06.14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통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 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	충북 청주시 청원구 (이하생략)
2	나O제	'03.04.03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통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 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	충북 청주시 상당구 (이하생략)
3	류O희	'69.11.16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통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 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교정시설 수감중 (부모확인)	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09.10. ~ 2026.09.24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고용센터 김유정(Tel. 043-230-671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